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지 방 공 무 원 의 구 분 변 경 에 따 른
전 직 임 용 등 에 관 한 특 례 규 정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’21.1.12. 공포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(’21.00.00. 시행)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7조)
-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도 임용권 부여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[시·도회의의 의장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회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후단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현행	개정안
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. 다만,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속기·방호·위생·조리·간호조무·시설관리·운전 직렬(이하 “신설직렬”이라 한다)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(이하 “전담직위 공무원”이라 한다)을 승진 임용, 강임, 전직, 전보 및 파견(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)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. 1. 2. (생략) ③ (생략) 제10조(전담직위평가 방법 등) ① (생략) ② 연구사 또는 지도사인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.	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전담직위평가 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1. 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4에 따른 전직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. 이 경우 필수과목이 총 3과목 이상인 경우에는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험과목을 정한다. 2. 3. (생략) ③ ④ (생략) 제17조(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)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. ----- ----- <u>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</u> ----- --. 2. 3. (현행과 같음) ③ ④ (현행과 같음) 제17조(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) <u>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47